투자법

제1조 이 법은 「2003년 투자법」이라 하며, 관보게재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산업무역부

장관: 산업무역부장관

협회: 요르단투자환경 및 경제활동개발협회

위원회: 이 법에 따라 설립한 투자유치위원회

사업: 이 법과 관련규칙과 지침에 따른 모든 경제, 산업, 농업, 서비스활동

고정자산: 사업에 한하여 사용되는 기계, 장비, 도구와 호텔 및 병원에 필요한 가구와 집기와 물자

목록: 위원회가 이 법과 관련규칙과 지침에 따라 면세를 허용한 고정자산과 부품목록

비용: 지방세를 제외하고, 관세와 시행 중인 법안에 따라 부과하는 그 밖의 비용

세금: 지방세를 제외하고 고정자산에 관련하여 시행 중인 법안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면세분야: 이 법과 관련규칙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비용과 세금의 면제혜택에 적용되는 모든 분야

투자자: 이 법에 따라 요르단하심왕국에 투자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생산력: 사업의 계획능력과 수용력

분야별 허가: 공공기관이 공공허가 외 특정사업에 대하여 허용하는 모든 허가 또는 동의

공공허가: 조직 또는 보건 또는 환경 또는 공공안전에 관한 허가

공공기관: 모든 부처, 국, 기관과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업에 대한 부문 별 허가발급권한을 가진 그 밖의 기관

제3조 (ㄱ)-(1)면세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자산이 비용과 세금면제목록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과 관련규칙에 명시한 혜택을 제공하고 비용 및 세금을 면제하여 준다.

(2)(ㄱ)항의 (1)의 규정에 명시한 바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을 위하여 국내에 반입 또는 매입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하여는 상품에 대한 공공세금(0%)을 적용한다.

(ㄴ)이 법의 규정에 따라 면세분야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사업에 면세혜택을 제공하는 개발구역3곳을 지정한다.

(ㄷ)면세혜택기간 동안 사업을 현 개발구역에서 다른 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원회의 서면동의를 취득한 후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해당사업을 이전한 개발구역 내 사업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4조 산업도시에 설립되거나 산업도시로 이전한 산업분야의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명시한 각 사업에 대한 면세혜택 외에도 이 법에 따라

공포한 규칙을 통하여 지정한 토대, 규정, 기간에 따라 소득세와 사회서비스세와 건물 및 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 (ㄱ)각료회의는 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산업무역부장관과 재정부장관과의 조정에 따라 면세분야이거나 면세분야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기간과 조건 하에 이 법에 명시한 혜택 및 면세특혜 또는 추가혜택 및 면세혜택제공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관보에 게재한다.
(ㄴ)이 조의 (ㄱ)항에 명시한 결정채택 시 사업의 경제개발상황과 지정학적 위치와 연구 및 개발, 수출증대, 기술이전, 요르단노동력고용에 있어 사업의 기여도를 고려한다.

제6조 이 법의 시행 전 시행한 「투자장려법」과 그 개정안에 따라 면세 및 특혜를 제공 받은 사업의 투자자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 중 1항을 선택할 수 있다: (ㄱ)이전의 관련법령과 조건에 따라 지정한 면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면세 및 특혜를 제공 받는다.
(ㄴ)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지정된 특혜와 면세혜택을 제공 받는다. 다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공포한 규칙이 지정한 조건과 필요사항에 따라 사업의 상황을 시정하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혜와 면세혜택은 사업의 상황을 시정한 후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 (ㄱ)투자장려기관에는 요르단투자환경 및 경제활동개발협회의 총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유치위원회”를 설립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투자장려기관의 총 책임자

(2)요르단경제사업개발기관의 총 책임자

(3)소득세국의 총 책임자

(4)관세국의 총 책임자

(5)기획부장관이 지명한 기획부대표자

(6)각료회의가 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한 민간부문대표자

(ㄴ)위원회는 투자장려기관의 직원 중 위원회의 기록을 작성하고 결정과 회의의장과 참석자의 서명을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임한다.

제8조 위원회는 지정업무 및 권한 외에도 투자자의 비용 및 세금면제신청서와 면세에 관한 그 밖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 법에 따라 필요한 결정을 채택한다.

제9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부재 시 부 위원장의 주재 하에 매달 최소 1회에 걸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한 위원회구성원5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4인 이상의 과반수가 찬성한 결정을 채택한다.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는 회의록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제10조 이 법에 지정한 특혜와 면세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위원장에게 필요한 모든 문서와 조건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 신청서를 제1차 회의에 제시하여 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신청거부 시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1조 (ㄱ)투자자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은 투자자의 신청서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ㄴ)-(1)장관이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이 결정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2)장관이 투자자의 이의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신청서를 재차 제시하여 신청서에 대하여 재고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본래의 결정을 고수하는 경우 해당사안을 각료회의에 회부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한다. 각료회의의 결정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제12조 (ㄱ)다른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한다:
(1)외국인은 지정규칙에서 정한 토대와 조건에 따라 소유 또는 참여 또는 출자형식으로 요르단에서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지정규칙을 통하여 투자분야와 외국인투자자의 참여 및 출자비율과 외국자본의 최대한도를 지정한다.

(2)(ㄱ)항의 (1)에 명시한 규칙에 포함된 경우 외 다른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자는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하게 대우한다.
(3)투자자는 직접 또는 자신이 선임한 자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관할기관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ㄴ)이 법에서 (외국자본)은 외국인이 요르단에 투자하는 현금 또는 자산 또는 상표와 특허를 포함하여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적 권리 또는 재산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제13조 모든 사업의 소유권은 몰수하거나 몰수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국익을 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송금 가능한 통화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 (ㄱ)이 법에 따라 면세혜택 및 특혜가 허용된 사업의 투자자는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사업의 고정자산설치완료사실과 영업개시일자 또는 실질적인 생산개시일자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2)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를 작성하고 요르단에서 허가를 취득한 법정회계감사관을 선임하여 사업에 대한 회계를 감사하도록 한다.
(3)면세되는 고정자산기록을 작성하고 이 기록에는 자산에 대한 상세한 항목을 기재한다.
(4)위원회가 요청한 사업고정자산에 관한 모든 정보, 데이터, 문서를 제공하고 위원장이 파견한 직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데이터와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조사 및 대조하도록 한다.

(ㄴ)투자자가 이 조의 (ㄱ)항에 명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일정기간 동안 의무이행을 통지한다. 통지기간에도 투자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5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디나르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투자자는 면세기간 동안 다른 투자자에게 사업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은 면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존의 면세, 보장, 편의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 받으며, 새 투자자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권리의 의무에 있어 이전투자자를 대신한다.

제16조 (ㄱ)투자자는 위원회의 동의를 취득하여 면세혜택이 적용되는 고정자산을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
(1)요르단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에 혜택을 받은 다른 투자자
(2)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개인 또는 기업. 이 경우 관련비용과 세금은 납부된 상태이어야 한다.

(ㄴ)투자자는 위원회의 동의 하에 면세된 고정자산을 재수출할 수 있다.

(ㄷ)면세된 고정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 법에 반하여 매매 또는 양도 또는 처분되거나 다른 사업 또는 면세혜택의 목적 외 다른 목적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투자자는 관련법과 규칙에 따라 사업에 대하여 혜택을 받은 세금과 비용과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2개 또는 그 이상의 사업 간 합병하는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수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새 사업에 대하여 합병한 기존의 사업에 대한 나머지 면세기간 동안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공포한 규칙에 명시한 면세혜택제공을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 (ㄱ)외국인투자자는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할 수 있다: (1)이 법과 이 법의 시행 전 시행한 「투자장려법」과 그 개정안에 따라 투자를 위하여 요르단에 반입한 자본을 인출
(2)투자로 발생한 이익 또는 수익을 국외로 송금
(3)지체 없이 투자를 정리하거나 사업 또는 지분 또는 주식을 매매. 이 경우 제3자에게 사업에 대한 채무와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한 상태이어야 한다.
(ㄴ)외국인투자자는 이 조의 (ㄱ)항에 명시한 비용을 송금 가능한 통화로 인출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에 대한 외국인기술자와 운영자는 자신의 임금과 보상금을 시행

중인 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0조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요르단하심왕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투자와 투자보호와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아랍협약과 국제협약을 준수한다.

제21조 (ㄱ)다른 법에 명시한 바에 관계 없이, 모든 공공기관은 분야별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투자사업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공공질서, 윤리, 보건, 교육, 안전, 환경, 자연자원보호, 국가안보, 공공경제정책이행 또는 국가경제이익을 위하여 시행 중인 법안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ㄴ)(1)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의 (ㄱ)항에 명시한 고려사항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분야별 허가취득조건으로 특정분야에 새 사업도입을 금지하여 시장의 규모를 제한하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경쟁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특히 허가가 허용되는 자의 수 또는 이들의 생산규모의 최대한도 또는 분야 별 허가취득을 위한 자본의 최소한도를 채택한 결정 또는 절차의 조건은 시장의 규모와 합법적인 경쟁의 제한행위로 본다. 그러나 허가발급에 관한 법령 또는 이 법령을 통하여 공포한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ㄷ)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분야별 허가는 관련법에 명시한 조건과 필요사항에 따라 발급하며, 이 경우 다음의 각 항을 준수한다: (1)특정사업에

대한 분야별 허가발급 시 법에 따라 허가발급권한을 부여 받거나 각료회의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공기관 외 다른 기관의 동의 또는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공공기관은 허가취득절차와 허가에 필요한 사항과 조건과 허가취득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와 발급기간을 지정하고 이는 어떠한 비용 없이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한다.

(ㄹ)(1)이 조의 (ㄷ)항의 (2)의 규정을 준수하여, 분야별 허가발급기간은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모든 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1)에 명시한 기간 내에 신청서수락 또는 거부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어떠한 결정도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신청인은 법적 권리를 통하여 장관에게 허가발급사안을 각료회의에 제시하여 투자장려기관의 총 책임자의 권고를 토대로 협의한 후 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1)항에 명시한 기간은 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 관세통관회사, 특별경제구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ㄱ)공공기관에서 분야별 허가발급을 거부한 경우 거부결정은 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작성한다.

(ㄴ)공공기관은 이 조의 (ㄱ)항에 따라 공표한 결정을 공표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결정을 통지 받은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결정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ㄱ)다른 법에 명시한 바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의 각 항을 준수한다: (1)분야별 허가가 필요한 모든 사업은 허가신청서제출일 이전에 시행 중인 회사법과 상인과 상호등록에 관하여 시행 중인 법에 따라 사전에 등록되어야 한다.
(2)사업등록 시 사전에 다른 동의 또는 허가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ㄴ)이 조의 (ㄱ)항에 따라 사업등록 시에도 사업소유자는 필요한 분야별 허가를 취득하기 전 업무를 개시할 수 없다.

제24조 (ㄱ)관련법에 따라 조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공허가를 발급하며, 공공허가발급은 분야별 허가취득일자와 별개로 발급한다.
(ㄴ)공공허가발급기관은 이 법의 제21조(ㄷ)항의 (2)와 (ㄹ)항의 규정에 명시한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각료회의는 장관과 재무부장관과의 협의에 따라 이 법의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규칙에는 다음의 각 항에 대하여 지정한다: (ㄱ)비용과 세금면제에 관한 규정, 절차, 비율, 기간, 조건
(ㄴ)비용과 세금면제혜택이 적용되는 국내개발구역과 구역 내 면세혜택에 관한 조건과 규정
(ㄷ)면세분야
(ㄹ)소득세와 사회서비스세가 면제 되는 사업에 대한 면세규정과 현존하는

개발구역에 따른 면세비율과 기간

(ㅁ)고정자산과 자산에 필요한 부품의 국내반입과 이 법에 따른 면세규정과 기간

(ㅂ)비용과 세금에 대한 추가면제와 사업확장 시 국내노동력과 생산력을 증대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면세혜택적용결정에 관한 규정. 이 경우 면세혜택은 증대된 부분에 부합하여 제공한다.

(ㅅ)2개 또는 그 이상의 사업 간 합병으로 설립한 새 사업에 대한 면세규정과 조건

제26조 (ㄱ)이 법의 규정은 아카바경제특별구역(Aqaba Special Economic Zone)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ㄴ)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다른 법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제27조 (ㄱ)「1995년 제16차 투자장려법」은 폐지하며, 이 법과 「요르단산업도시기관법」에 명시한 분야, 투자유치, 면세에 관한 규정은 투자법을 토대로 다른 대체규정이 공포될 때까지 시행한다.

(ㄴ)「1995년 제16차 투자장려법」에 따라 공포한 규칙과 지침은 폐지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시행한다.

(ㄷ)시행 중인 다른 법에 명시한 (투자장려법)은 (투자법)을 의미한다.

제28조 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한다.